

제5차 한국인삼약초산업 전략화 세미나

고품질 인삼 관리를 위한 인삼정책의 방향

박종서 과장 / 농림부 채소특작과장

1. 인삼산업의 현황

□ 인삼생산액은 농업총생산액의 1.7%이지만 단일품목으로 11위임

- 인삼생산액 : ('90)1,978 → ('95)2,839 → ('00)3,728 → ('02)5,550
- 홍삼 전매제 폐지('96)이후 인삼재배면적 · 생산량 증가추세
 - 생 산 량 : ('96) 10,147톤 → ('00) 13,664 → ('03) 15,172

□ 10a당 인삼소득(2002)은 쌀 소득의 3배 정도임

- 소득('02) : 인삼(6,863천원), 장미(6,000), 쌀(686), 노지고추(1,420)

□ 인삼의 유통구조는 원료삼별로 구분되어 유통

- 수삼은 계약재배(6년근), 포전매매(4·5년근), 자가출하 형태로 유통
- 홍삼은 6년근 · 인삼공사 또는 인삼조합 중심, 백삼은 4·5년근 · 금산제조업체 중심으로 생산

□ 수삼으로 50%, 홍삼 · 태극삼 · 백삼으로 50% 소비

- 수삼은 삼계탕재료, 백삼은 한약재 · 보약, 홍삼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

□ '96년이후 인삼 가공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

- 인삼류 제조업체는 529여개소에 달하나 한국인삼공사등 1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영세(평균자본금 328백만원)
- 인삼제품류 제조업체는 447개(2002), 제조품목수는 850여개정도임

□ 농산물 수출 중 인삼수출은 약 4% 정도임

- 인삼수출액은 총수출액 1,860백만불의 3.6%(67백만불)으로 '0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'0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섬
- 원형삼 중 홍삼이, 원형삼보다는 가공제품 수출이 증가추세임

□ 인삼 수입은 MMA물량 포함하여 약 200여톤에 이르고 있음

- 2003년도 인삼류 수입물량은 206톤(5,290천\$)으로 '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MMA수입물량 이행률도 높아지고 있음

2. 인삼산업의 국제경쟁력

□ 생산경쟁력

- 인삼분야 경쟁상대국은 중국, 캐나다, 호주등이며, 중국은 세계인삼 생산량의 60%를 점유하고 있으며, 기타국가도 증가 추세임
- 재배규모가 경쟁국에 비해 영세하고 기계화가 되지 못하여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며, 단위수량도 낮음

□ 가격 경쟁력

- 홍콩에서 유통되고 있는 홍삼을 기준으로 한국산은 중국산 12배, 미국산 5배, 캐나다산 7배로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음

구 분	한 국	캐나다	미 국	중 국
홍삼 6년근(\$/kg) (지수)	155.1 (11.3)	20.1 (1.5)	31.5 (2.4)	13.0 (1.0)

□ 품질경쟁력

- 고려인삼은 외국삼에 비해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많은 종류(2~4배)의 ginsenoside(인삼 사포닌)를 함유하고 있음.
- 외국삼에 비해 각종 ginsenoside 함유량 및 조성 분포가 균등하고, 비사포닌계 생리활성물질과 산성다당체 함량이 2~3배 높음.

□ DDA 영향분석

- 선진국 수준의 관세감축과 TRQ물량 증량시 국내 인삼산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국내소비는 '00-'02년 평균소비량(13,185톤)과 비슷(13,210)하나, 자급율 감소로 외국산 비율은 상승
- 중국산 수삼 수입단가는 2.19\$(2,628원)으로 국내판매가격은 약 8,900원/kg 정도이며, 국내산인삼 농가판매가격(25,496원/kg)에 37%에 불과

3. 인삼산업 발전 중장기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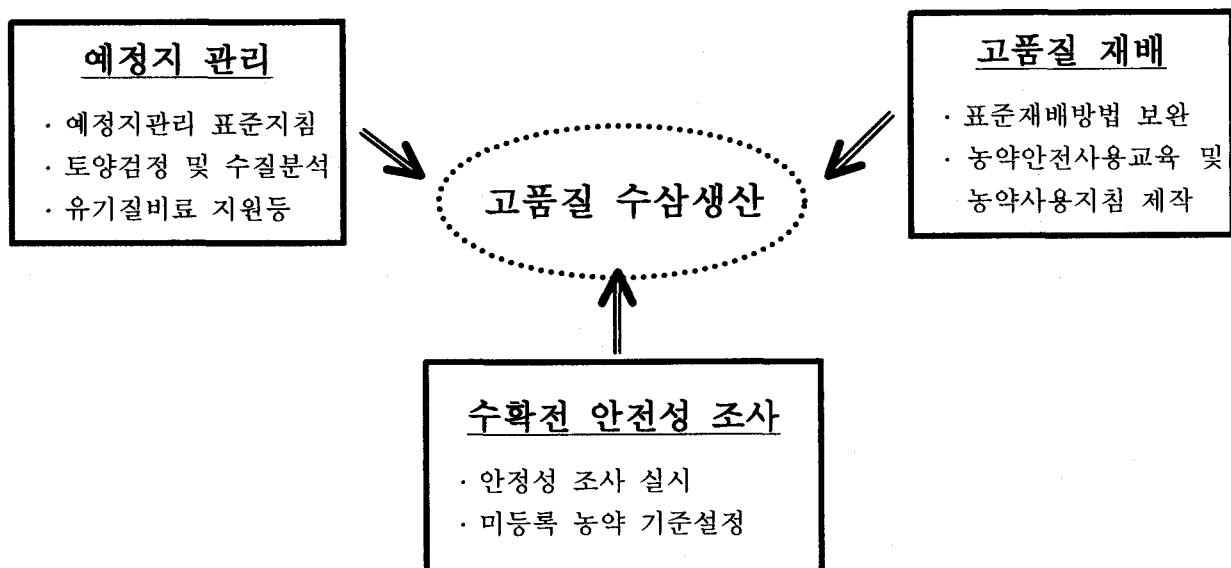
< 목 표 >

-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인삼 생산·유통으로 인삼종주국 위상 확보

↑ ↑ ↑

- 단계별 고품질 원료삼 생산체계 확립
- 인삼 생산-가공-유통계열화 사업추진
- GAP 및 생산이력제 추진
- 외국삼 부정유통 근절
- 인삼류 검사강화 및 미검사품 유통방지
- 연구개발 체계정립 및 기능강화
- 차별화된 시장별 수출전략 추진

■ 단계별 고품질 원료삼 생산체계 확립



■ 인삼 생산-가공-유통계열화 사업추진

- 연차적으로 계열화사업을 확대하여 전체 인삼생산의 40% 이상을 담당
 - ('04) 500ha → ('07) 700 → ('10) 1,000(수확면적 2,500ha)

〈사업기대효과〉

- ① 고품질 우량 원료삼의 안정적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
- ② 유통구조를 6-8단계에서 3-4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비용 절감
- ③ 인삼브랜드화를 통한 외국삼과의 차별화 실현 및 소비자신뢰확보등

■ GAP 및 생산이력제 추진

- GAP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
 - 인삼GAP 표준재배법(SOP) 마련('04) 및 시범사업 실시('05~'06)
 - 인삼계열화사업과 연계하여 인삼GAP 본격 실시('07년 이후)

□ 생산이력제도로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체계 구축 마련(2010년까지)

- RFID칩등을 이용한 농산물이력 검색기술 체계화(2009년까지)

■ 외국삼 부정유통 근절

□ 외국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단속 철저

□ MMA물량 사후관리 철저(농협중앙회)

- MMA물량에 대한 검사내역 공개 및 분기별 1회이상 재고조사

□ 외국삼 식별능력 제고

- 최첨단 기기(NIRS, 전자코등)를 지속 도입하여 외국삼 식별능력 제고

□ 외국삼 불법유통방지를 위해 밀수 단속강화

- 밀수기관(관세청등) 밀수 단속시 최대한 협조(인원, 원산지분석등)

■ 인삼류 검사강화 및 미검사품 유통방지

□ 미검사품·불합격품 유통방지를 위한 인삼산업법 개정내용 홍보

- 2004.7.1일 시행한 법 개정내용을 담은 홍보물 제작배포

□ 잔류농약검사 강화

- 검사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잔류농약검사 확대실시
 - 1단계(2004.7.1) : 수출품, 농협생산품, 정관장 중심으로 확인검사
 - 2단계(2005.1.1) : 모든 인삼류를 대상으로 확인검사
- 철저한 인삼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·장비 국고보조

□ 검사제도·검사품에 대한 국내 홍보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

-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좋은인삼고르기등 전국적인 홍보 실시
-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검사마크를 개발하여 검사품을 홍보

□ 미검사품, 불합격품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추진(농관원)

- 월 1회 단속을 기본으로 시·도교차 단속

□ 2006세계금산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금산시장 유통질서 확립

■ 연구개발 체계정립 및 기능강화

□ 기능별로 국가 연구사업 체계 확립

- 농진청 인삼약초과는 인삼재배, 품종육성, 병해충 방제등 기초연구 수행
 - 음성에 인삼·약초시험장 건립을 추진('04~'09)
- 농진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인삼의 신기능성물질 탐색 및 개발등
- 한식연 인삼연구단은 인삼효능을 특화시킨 인삼제품류 개발등

□ 산학관연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

- 단기 기획연구과제 : 농안기금용역사업 지원
- 중·장기 기획연구과제 : 농림기술개발사업, 바이오그린21사업 지원

□ 국가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간의 협력연구 강화

- 민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

■ 차별화된 시장별 수출전략 추진

- 수출 추진 목표 : '13년까지 150백만불 달성
- 국가별 수출 전략 및 세부추진 방안

중화권 : 오인식해소, 수입의약품 등록 확대, 위조품 방지

- 중화권은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한 고려삼 승열작용 오인식 해소 우선
- 인삼캐릭터 해외상표등록을 통한 위조품 방지 ('03) 19개국 → ('04) 22
- 지속적인 중국내 고려홍삼에 대한 수입의약품으로 등록
 - 태극삼·백삼의 4·5년근 등록을 위한 자료수집 추진
- 한류열풍을 이용한 TV광고, 한중드라마 협찬등을 이용한 홍보지속

기타국가 : 인삼제품위주 및 새로운 수요창출 위한 홍보

- 일본은 인삼특유의 쓴맛과 강한 향에 익숙지 않아 제품류 위주 홍보
- 미국은 한인중심 소비에서 미국현지인에 대한 홍보 강화
- 유럽은 인삼을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분류하므로 의약품등록 및 홍보 지속 추진

<참 고>

인삼산업법 개정 주요내용 요약

항 목	종 전	개 정 내 용
1. 인삼의 품질 관리 및 불법 유통 근절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검사기준 미달제품은 수거·폐기 또는 재검사, 불응하는 경우 압류 ◦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은 압류 또는 검사를 받도록 명함 ◦ 처분명령 위반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2.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자에 대한 벌칙강화	◦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3. 인삼류 검사 예외 제한	◦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다른 제조자 또는 수집자에게 판매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인삼류 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* 2006. 1. 1일부터 시행
4.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	◦ 인삼검사를 받고자하는 자가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관능검사 신청. 단, 농약잔류검사 등은 10일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관능검사, 농약잔류검사 등 모든 검사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 까지 신청 * 2005. 1.1일부터 시행